경제혁신 3개년 계획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http://www.smba.go.kr

보 도 자 료

2015년 12월 1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4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과장 김동주(044-203-4530), 홍경태 사무관(4533)
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정기환(042-481-4399), 류선미 사무관(4459)

첨단기술보호,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

- 산업부·중기청,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('16~'18) 발표 -

▪ 국가핵심기술 현황관리 및 점검 강화, 채용연계형 산업보안 대학원 신규 지원
▪ 중소기업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, 조정·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확대 등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윤상직)·**중소기업청**(청장 한정화)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전,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**중기전략인 "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**('16~'18)"과 "**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**('16~'18)"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(위원장 : 산업부 장관) 심의를 거쳐 **확정**했다.

○ 아울러, 자동차, 조선,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번에 수립한 **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주요정책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**를 **개최**하였다.

< 기술보호 설명회 개요 >

▪ 일시/장소 : '15. 12. 14(월) 15:00~17:00 / 르네상스호텔 4층(유니버셜룸)
▪ 참 석 자 :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·보안책임자, 기술보호 직무종사자 등 100여명
▪ 행사내용 : (주제발표) ① '**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**'(산업부 발표)
② '**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**'(중기청 발표)
(특강) ① 2015 국가핵심기술 보호 **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대응방안**
② 기술·영업비밀 범죄 **최근 판결·판례 분석 및 시사점**

□ 산업부와 중기청은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**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**을 **제고**('15년 보통수준 →'18년 양호)하고, **중소·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 강화**('15년 500명 → '18년 2,000명), **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 확대**('15년 5,000개사 → '18년 7,000개사), **산업기술보호 진단·컨설팅 활성화**('15년 1,000건 → '18년 2,000건) **등 산업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**이다.

□ 산업부는 그동안 "**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**('13~'15)"을 수립·시행하여 **국가핵심기술 지정·관리**(총 8개분야 47개 기술)를 통해 **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**를 **구축**하였고,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지원 등 **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**을 **지원**하고, **산업기술 확인제**를 **도입**하여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분쟁 발생시 근거로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○ 금번 **제2차 종합계획**('16~'18)은 ① **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**, ② **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**, ③ **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**, ④ **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**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.

○ **주요 세부추진과제**로 **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**를 **도입**하여 보유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**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**, **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** 및 **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**할 계획이다.

□ **중기청**의 **"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**('16~'18)"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**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**로, ① **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**, ② **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**, ③ **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**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.

○ 이를 위해, 중소기업의 **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**, **'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'*의 조정·중재를 통한**

기술분쟁 해결 지원,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**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**할 계획이다.

* 판사, 변호사,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('15.1월 설치)

□ 12.14(월) 개최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설명회에서는 정부 주요시책 설명과 더불어 **관계 전문가 특강을 함께 실시하여 큰 호응**을 받았다.

○ 「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**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결과**를 **발표**하고, 최근의 기술보호 및 유출 동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**정부의 기술보호 제도** 및 **기술유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**하였다.

○ 또한, **최근 첨단기술·영업비밀 유출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사례**를 **분석**하여 **기술유출 범죄 동향 및 시사점을 제시**하였다.

□ **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**은 "지난 7.9일 대통령 주재 「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」에서 보고한 **「수출경쟁력 강화대책」**에 **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·추진중"** 이라고 밝히고,

○ "금번에 수립한 **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('16~'18)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** 및 **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[참고] 1.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설명회
2. 제2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('16~'18) 요약
3.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('16~'18) 요약

[별첨] 1. 제2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('16~'18)
2.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('16~'18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홍경태 사무관(☎044-203-4533), 중소기업청 류선미 사무관(☎042-481-44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설명회

□ 추진배경

○ 관련법*에 따라 수립('15.11)한 **산업기술보호 관련 종합계획**('16~'18)**설명회**를 **산업부·중기청이 공동·개최**하여 자동차, 조선,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기관 **기술보호 인식제고**

*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
□ 행사개요

○ 일　　시 : '15. 12. 14(월) 15:00~17:00
○ 장　　소 : 르네상스호텔 유니버셜룸(4층)
○ 주최/주관 : 산업부·중기청/산업기술보호협회·대중소기업협력재단
○ 참석대상 :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·보안책임자, 산·학·연 현장의 기술보호관련 직무 종사자 100명 내외
○ 주제발표 : 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(산업부)
②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(중기청)
○ 특　　강 : ① 2015 국가핵심기술 보호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대응방안
② 기술·영업비밀 범죄 최근 판결·판례 분석 및 시사점

□ 세부일정(안)

시 간	세부내용	비 고
14:40 - 15:00(20)	등록 및 행사안내	-
15:00 - 15:01(1)	개회	사회자
15:01 - 15:05(4)	인사말씀	산업부
15:05 - 15:20(15)	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	산업부
15:20 - 15:35(15)	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발표	중기청
15:35 - 16:00(25)	질의응답 및 휴식	
16:00 - 16:30(30)	2015 국가핵심기술 보호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대응방안	안성진 성균관대 교수
16:30 - 17:00(30)	기술·영업비밀 범죄 최근 판결·판례 분석 및 시사점	김경환 변호사
17:00	폐회 및 안내	-

참고 2 제2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('16~'18) 요약

1. 개요

○ (법적근거)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

○ (계획기간) 2016년 ~ 2018년(3개년)

* 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,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

2.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동향 및 문제점

○ **(해외)** 세계경제의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기술 확보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**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정책 강화**

* 최근 미국, 일본 등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

○ **(국내)** 산업기술보호법 시행('07),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시행('14) 등 정부의 기술보호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, **산업기술 유출은 증가 추세**

*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(국정원) : ('12) 30건 → ('13) 49건 → ('14) 63건

○ **(문제점)**

①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인 관리·보호 미흡

② 중소·중견 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역량 취약

③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및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음

3. 종합계획 추진과제 주요내용

1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

○ 로봇, 건설, 신재생에너지 등 **신성장산업 분야**에 대하여 **국가핵심기술 적극 발굴** 및 **일정기간이 경과한 국가핵심기술**은 **존치 및 변경 필요성** 등을 **심층 재검토**

* 대상기술별로 수명주기를 반영하여 심층 재검토 기간(2년~3년) 설정

○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해외인수·합병에 대한 관리강화, **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 도입*** 등 현황 관리 및 점검 강화

*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확인해주고, **확인기관에 대해 R&D 과제 발굴·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**

○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, 기술이전·사용, 인수·합병과정에서의 **대응 매뉴얼**을 **마련**하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예방 강화

* 비밀유지 전략 수립, 상대방 기업의 보안체계 점검,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등

2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예방역량 강화

○ 중진공, 산단공, TP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**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대상 교육, 규모별·업종별 맞춤형 방문교육 확대**

* 중소기업 CEO 보안교육 목표 : ('15) 500명 → ('18) 2,000명

○ 산업보안관리사(민간자격증)의 국가공인자격 전환 및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**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**

*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·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산업보안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연계 학과지원 사업 추진

○ **국내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**에 대하여 **산학협력 교수 채용을 지원**하여 우수인력의 해외 이탈 방지

○ **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**에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보안교육·상담, 보안관제 서비스 등의 **지원 실적**을 **반영**하여 대-중소기업 기술보호 협력 활성화

* 현재 평가항목은 기술자료 임치제, 원본증명서비스 지원 실적만 반영

3 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보안설비 구축, 보안관제서비스, 기술자료 임치 및 원본증명서비스 등 현장지원 확대

○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보호 지원 상담창구를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로 일원화하고, 지역별·분야별 상담 및 지원인력 확대

4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

○ 권역별 민간-정보수사기관 공동협의체 운영·정보교류 활성화 및 **산업기술 유출·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**, 현장상담 지원 강화

○ **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강화 추진** 및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협의

참고 3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('16~'18) 요약

1. 개 요

○ (법적 근거)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

○ (계획 기간) 2016년 ~ 2018년(3개년)

2.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

○ **(기술유출 동향)** 기술유출 중소기업 비율*은 감소한 반면, 유출 건당 피해규모**는 증가하고 있으며, 퇴직자 등 기업 내부인력이 유출에 관여

* ('09) 14.7% → ('14) 3.3%, ('09) 10.2억원→ ('14) 24.9억원

○ **(보호역량 및 인식)**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9.5% 수준으로 여전히 취약하며,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황

○ **(기술유출 대응)** 기술 유출이 발생시 중소기업 대응이 경고장 발송에 그치는 등 미흡하며, 기술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

○ **(정부 지원)** 관계 부처간 협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나, 기술보호 상담 창구의 부처별 운영으로 기업의 불편 초래 및 정책 인지도도 낮은 상황

3. 지원계획 주요 내용

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

○ **기술보호 상담·자문**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, **기술자료 임치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**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영업비밀 보유사실 입증을 지원

○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한 **보안관제서비스 무상 제공** 및 중소기업 기업환경에 적합한 **보안시스템 구축 지원**

○ 해외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사전교육 실시 및 旣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지 상담을 지원

○ 핵심기술인력의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을 위해 **중소기업과 핵심 기술인력간 경업금지 약정 체결을 확산**하고,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핵심기술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

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

○ **'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'의 조정·중재를 통해 기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**하고, 법원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배정받아 처리하는 법원연계 조정을 확대*

* 서울중앙지법과 법원연계 조정 실시를 위한 MOU 체결('15.10) → 他 지법으로 확대

○ 자체적인 분쟁대응 인력 및 자금이 부족한 **기술분쟁 조정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비용**(5백만원 한도) **및 소송비용* 지원**

*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방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지원(최대 10백만원)

○ **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비용*을 지원**하고, 특허심판 및 특허법원 소송 진행시 **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 변리** 지원(특허청)

* 건당 5백만원 이하(단,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10백만원 지원)

○ **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**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(특허청)

* [지원내용] 보험료의 70% 지원(최대 30백만원), [보장내용] 소 제기, 피소 대응 등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상(최대 5억원), [보장기간]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

3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

○ **중소기업 CEO**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**전문교육과정 운영*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**

* 특허법원·KAIST와 연계하여 '中企 CEO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' 개설('16년 2개 과정)

○ **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기능을 중기청 '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'*에서 통합 운영**('16.1월 ~)

*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 운영기관 : 대중소기업협력재단